

인천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2329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천상현, 나완수, 이창선

피고 1. A

소송대리인 B

2. C

변론 종결 2021. 4. 7.

판결 선고 2021. 5. 1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109,587원 및 그중 25,981,314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1. 3. 26.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20. 1.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22. 접수 제346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이 D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해주었고, 피고 C은 피고 A의 남편인 소외 B의 동생이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2003. 8. 31.	매매를 원인으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6. 4. 11.	B의 부(父)인 E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6. 2. 16.	피고 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20. 1. 22.	피고 C 앞으로 2020. 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이 2018. 6. 4.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원고는 위 피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2023. 6. 2.까지를 신용보증기간으로 한 신용보증을 하였고, 위 피고는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에 2020. 1. 3.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원고는 2020. 4. 27.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에게 피고 A의 차용원리금 25,981,31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20. 5. 14. 현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26,109,587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 26,109,587원 및 그중 위 대위변제액인

25,981,314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3. 26.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1) 사해행위 여부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20. 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A이 위 매매계약일 기준 소유별도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거나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일을 기준 피고 A의 대출금 채무 현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 11. 25.	신용대출	F	1,805,000
2019. 12. 12.	신용대출	F	9,391,000
2019. 4. 22.	신용대출	G	10,000,000
2019. 12. 2.	카드론	D	2,666,000
2019. 7. 22.	현금서비스	D	800,000

그런데, 위와 같이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피고 A이 위와 같이 D에 대하여 원리금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2020. 1. 3. 이후로서, 원고가 피고 A의 대위변제한 2020. 4. 28. 사이인 점, 피고 A과 피고 C은 피고 C이 2018. 2.경 피고 A에게 지급한 2,000만 원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점, 위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 A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달리 마땅한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0. 1. 21.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피고 A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경 이미 피고 A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이 2020. 1. 21.자로 마쳐진 것인데, 2018. 2.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시점이므로 이러한 매매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8. 2.경 피고 A에게 합계액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와 부동산등기부등본(갑 제5호증)에는 매매계약체결일이, 피고 C이 주장하는 2018. 2.경이 아닌 2020. 1. 21.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금전거래내역만으로 이러한 처분문서와 공문서상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경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 C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 주장을 자신은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취지의 항변으로 선행하여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법리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70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피고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8. 2.경에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A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 C은 피고 A의 배우자인 B의 동생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피고 B -> E에게로의 증여 -> 피고 A으로의 증여 -> 이 사건 매매 등 피고들 가족 내에서 여러 번의 소유권변동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변동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소외 B이 자신에 대한 채권추심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 제3회 변론조서), 피고 A이 D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상당부분을 위 B이 사용한 점(이 법원 제3회 변론조서),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매수인이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피고 A이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점에 관하여 악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취소의 방법 및 범위

2020. 1. 21.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22. 접수 제346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1)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병국

별지

1)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하여 피고 A이 피고 C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청구한 것으로 선행하여 판단한다.